HSBC 국제현금카드 이용약관

제1조 (약관의 적용)

- ① 본 약관은 홍콩상하이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함)과 은행에 HSBC 국제현금카드(이하 "카드"라고함)의 발급을 신청하고 본 약관을 승인하여 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(이하 "이용자"라 함) 사이의카드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한다.
- ② 카드의 이용에 관하여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금융결제원의 CD공동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며 이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상거래관례에 따른다.

제2조 (카드의 발급)

- ① 카드의 발급은 카드와 연결이 가능한 은행 원화계좌(이하 "연결계좌"라 함)를 보유한 고객 중 외국환거래법 상 국내 거주자 신분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카드의 신규발급, 재발급 또는 해지를 신청할 시에는 이용자가 직접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은행은 관련 법령 및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승인한 후처리한다.
- ③ 이용자는 은행으로부터 1인당 1개의 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카드 1개당 1개의 연결계좌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은행은 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시 <표1>에서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.

제3조 (카드의 이용)

- ① 이용자는 국내에서 은행 및 금융결제공동망 참가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 및 현금자동입·출금기 (이하 양자를 "자동화기기"라고 함)를 통하여 연결계좌의 잔액조회, 입·출금, 계좌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.
- ② 이용자는 해외에서 은행 및 은행과 제휴한 기관이 설치한 해외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연결계좌의 잔액조회 및 현금인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, 각 자동화기기의 이용시간은 현지의 이용시간 규정을 따른다.
- ③ 이용자가 해외에서 은행의 해외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시 해당 국가의 현지통화를 홍콩달러(HKD)로 환산 후 원화(KRW)로 재환산하여 연결계좌에서 출금된다.
- ④ 이용자가 해외에서 은행과 제휴한 기관이 설치한 해외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시 해당 국가의 현지통화를 제휴기관에서 미달러(USD)로 환산한 후 은행이 이를 홍콩달러(HKD)로 환산 후 원화(KRW)로 재환산하여 연결계좌에서 출금된다.
- ⑤ 이용자는 카드이용시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은행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카드이용기록을 감독기관에 보고할 수 있으며

필요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카드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4조 (이체 및 인출한도)

- ① 국내에서 은행 및 금융결제공동망 참가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및 이체거래 이용시 적용되는 1회 및 1일 한도 및 수수료는 당행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른다.
- ② 해외에서 은행 및 은행과 제휴한 기관이 설치한 해외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거래 이용시 1일 인출한도는 미화 2,000불(USD 2,000), 연간 인출한도는 미화 20,000불(USD 20,000)로 하며, 인출회수에는 한도가 없다. 다만, 관련법령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인출한도 및 회수 제한이 사전고지 없이 조정될 수 있다.
- ③ 이용자의 해외인출 거래시에는 <표2>에서 정한 소정의 해외인출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. 다만, 해외의 은행과 제휴한 기관이 부과하는 자동화기기 사용수수료는 은행의 인출수수료와는 별도로 각 자동화기기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부과될 수 있다.
- ④ 동조 제2항에서의 연간 인출한도 산출시 "연간"이라 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의미하며,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다.

제5조 (이용의 제한)

- ① 이용자가 제4조에서 정한 인출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은행은 일시적으로 이용자의 카드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.
- ② 은행은 금융사고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카드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.
 - 자동화기기의 고장, 온라인 장애 발생 및 사고발생시
 - 전자금융이용약관 제10조에 명시된 카드 비밀번호 오류 입력 회수 초과, 지급제한, 사고신고 접수시
 - 부정카드사용으로 의심되는 거래 발생 및 거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
- ③ 이용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성이 변동하였음을 은행이 알게된 경우 은행은 해당 이용자의 카드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.
- ④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의 위반 또는 위반 혐의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카드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은행은 해당 이용자의 카드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.
- ⑤ 은행은 동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용자에게 카드의 지급정지 사실을 이용자가 은행에 사전에 등록한 전화번호, 이메일, 또는 주소로 연락하여 안내한다.
- ⑥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•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범위내에서 CD/ATM기를 통해 카드 이용시 10분간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. 다만, 타점권으로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

제6조 (카드의 회수 및 교체)

① 이용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성이 변동하여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카드 발급 기준 또는 은행내부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될 경우에, 이용자는 즉시 은행에 통보하고 카드를 교체

또는 반납하여야 한다.

- ② 이용자가 은행에 통보하기 전에 은행이 먼저 제1항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 또는 확인한 후 이용자의 카드를 교체 또는 회수할 수 있다.
- ③ 은행이 이용자에게 카드의 교체 또는 회수를 통지 및 요청한 후 이용자가 일정기한 내에 카드를 적절히 교체 또는 회수하지 않을 경우, 은행은 이용자의 카드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제7조 (약관의 변경)

은행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이를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, 이용자에게 전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으로 통지한다.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이용자로부터 이의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 (손실부담및 면책)

- ① 이용자는 카드를 분실, 도난, 사취, 강취, 갈취 등을 당한 경우 은행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만일 이용자가 그 통지를 게을리하여 은행이 이용자로부터 통지를 받기 전에 제3자가 카드를 무단 사용한 경우, 이용자는 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.
 - 1. 이용자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.
 - 2.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카드 또는 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
- ③ 이용자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카드를 위·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, 이용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- ④ 카드의 훼손, 파손, 오손 등 이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카드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은행이 관리하지 않는 자동화기기의 이상 또는 자동화기기네트워크의 이상 등으로 국내외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, 은행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<표1> 국제현금카드 (재)발급 수수료

	프리미어 고객	일반고객
신규 발급	건당 2,000원	건당 2,000원
재발급	건당 2,000원	건당 2,000원

<표2> 해외인출 수수료

	프리미어 고객	일반고객
해외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시	면제	9 000 이 / 1 정
인출 수수료	년 <i>세</i>	2,000원 / 1회
해외 제휴 자동화기기 이용시	3,000원 / 1회	4,000원 / 1회
인출 수수료		